

#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변 카페 운영 및 어르신 행복기금

##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5-147
------------	--------

제출년월일 : 2025.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제안이유

마포구 노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수변 카페의 운영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 나. 카페 설치 및 운영
- 다. 보험가입, 운영세칙
- 라. 기금 설치, 존속기한, 재원 및 용도
- 마.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바. 위원회 설치 및 임기, 기능

###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 다. 합의: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2025. 10. 21.~11. 10. (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 5) 제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2025. 11.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변 카페 운영 및 어르신 행복기금 설치 ·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수변 카페의 운영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 행복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수변 카페”란 주민 여가생활 증진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카페를 말한다.
- “매출액 등”이란 카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 전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변 카페(이하 “카페”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 행복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카페를 안전하게 유지 · 관리하여야 하며, 카페의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인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카페 설치 및 운영

**제4조(카페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카페를 설치·운영한다.

1. 차, 음료, 과자, 빵 등의 판매
  2.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장소 등의 제공 및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카페의 위치는 마포구 성산동 405(성미다리 인근)로 한다.

**제5조(카페의 관리 · 운영)** ① 카페의 관리 · 운영은 구청장이 하며, 카페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카페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카페 운영자는 카페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요원 등을 지휘 · 감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카페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수익 협상을 할 수 있다.

**제6조(카페 매출액 등의 처리)** 카페의 매출액 등은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금 계좌에 수입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카페 판매금액 등)**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판매금액 및 할인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이를 정할 수 있다.

**제8조(카페 이용자 준수사항)** 카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이용 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2. 자전거, 킥보드 등에 탑승한 채 출입하거나 카페 내에서 이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카페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9조(카페 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카페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식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2. 카페의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카페 이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카페 이용자 변상책임)** 카페 이용자는 고의로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카페 공간지원)** ①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카페를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카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카페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카페 사용자의 의무)** ① 제11조의 카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카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카페 시설물 및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카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망 등의 인적·물적 사고에 대비하여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카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3장 기금 설치 및 운용

**제15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기금을 설치한다.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카페 운영으로 발생하는 매출액 등
2. 개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3. 국고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4. 구의 출연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18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노인복지 관련 지원 사업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와

## 관련된 지원 사업

3. 노인의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 사업
  4.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5.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카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체(인건비, 재료비, 시설유지비, 홍보비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노인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제2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카페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카페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 행복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노인복지 관련 대상 사업 선정·지급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카페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당연직 위원은 카페 업무 담당과장 1명, 복지 관련 업무 담당과장 중 1명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1. 구의회 의원 1명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노인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노인복지시설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심의 안건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은 재적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카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구의원이 구의회 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 제4장 보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변 카페 운영 및 어르신 행복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조례5조(카페의 관리·운영), 제17조(기금의 재원), 제18조(기금의 용도), 제28조(수당)

### 2. 비용추계의 전제

- 카페 매출액과 비용은 투자심사의뢰서 등을 참고하여 산출함
- 비용추계기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2026년 1월 준공 예정으로 2026년은 운영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10개월분 반영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카페매출액	437,858	459,751	482,738	506,875	532,219	2,419,441	
	소계(a)	437,858	459,751	482,738	506,875	532,219	2,419,441	
세출	○ 운영비	349,911	367,407	385,777	405,066	425,319	1,933,480	
	소계(b)	349,911	367,407	385,777	405,066	425,319	1,933,480	
□ 총 비용(a-b)		87,947	92,344	96,961	101,809	106,900	485,961	

### 4. 재원조달 방안

- 기금조성시까지 일반회계를 활용

### 5. 덧붙이는 의견: 구체적인 세입·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

###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김은정
연락처	02-3153-8853